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4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최혁진 · 문진석
이연희 · 황명선 · 강준현
임호선 · 전진숙 · 박수현
장철민 · 문금주 · 이재관
백승아 · 임미애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, 충남,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.

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,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5조의3제2항, 제64조).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제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.

제64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제9호의2 및 제9호의3으로 한다.

1.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3의

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p>③ (생략)</p> <p>제6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8의2. (생략)</p> <p>8의3. (생략)</p> <p>9. (생략)</p>	<p><u>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4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자</u></p> <p>2. ~ 9. (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</p> <p>9의2. (현행 제8호의2와 같음)</p> <p>9의3. (현행 제8호의3와 같음)</p> <p>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
--	---